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오산시의회의장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복 의원 발의)

1. 제안이유

- 교차로 연결금지구간 기준을 완화하고 변속차로 기준을 단일화하여 도로규모와 이용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비함으로써 도로연결 허가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유연한 도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 완화(별표 4)
-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 단일화(별표 5)

3. 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5년 11월 19일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
- 제출서식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오산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입법예고>공지)
-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 우편번호 : 18132
 -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오산시의회)
 - 전 화 : 031)8036-8034
 - 전자메일 : jw3788@korea.kr

오산시 조례 제 호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와 별표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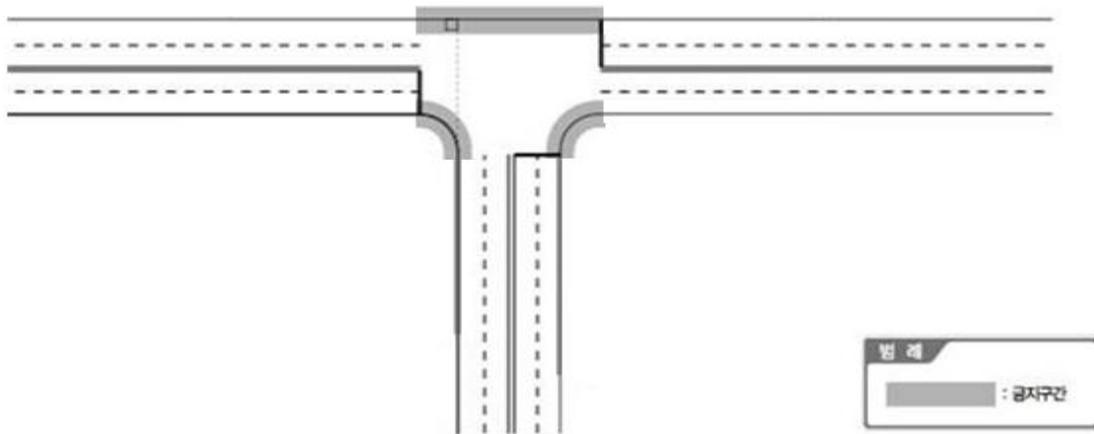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제6조제3호 관련)

1.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연결 금지구간은 도로의 정지선 및 곡선부를 포함한 교차 영역으로 한다.
- 나. 도시계획시설(교통광장)은 시설결정된 전체 면적으로 한다.
- 다. 횡단보도, 신호등 등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을 금지한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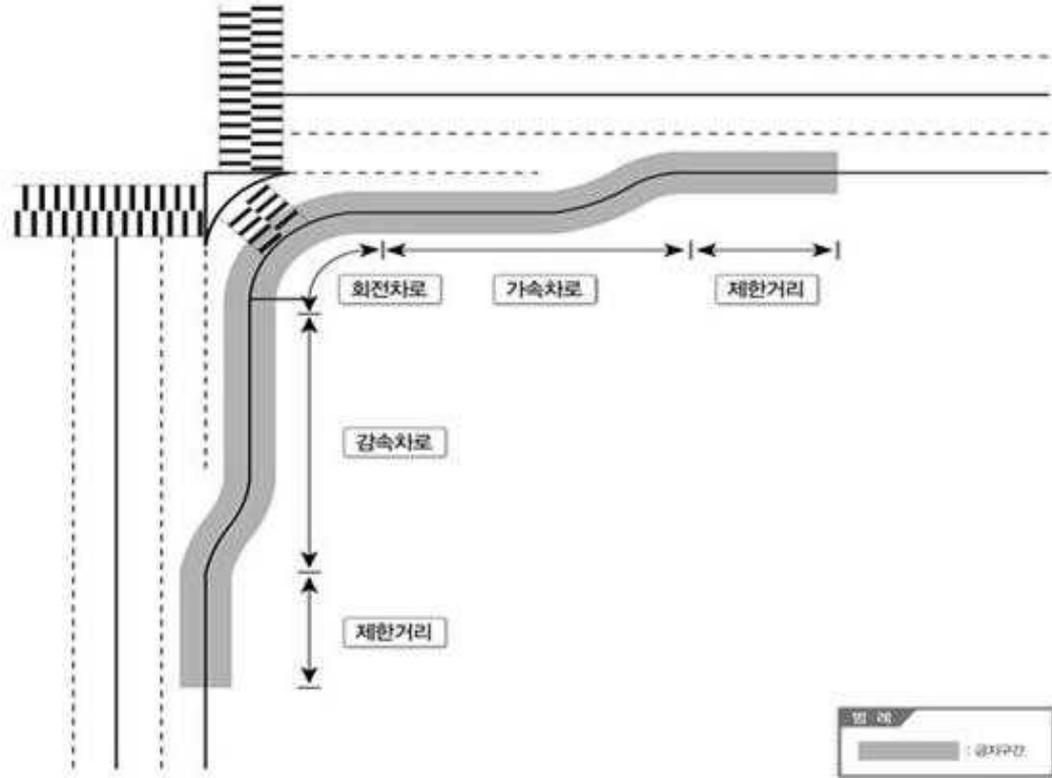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감속차로 전방·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제한거리의 최소길이 (미터)	10	20

-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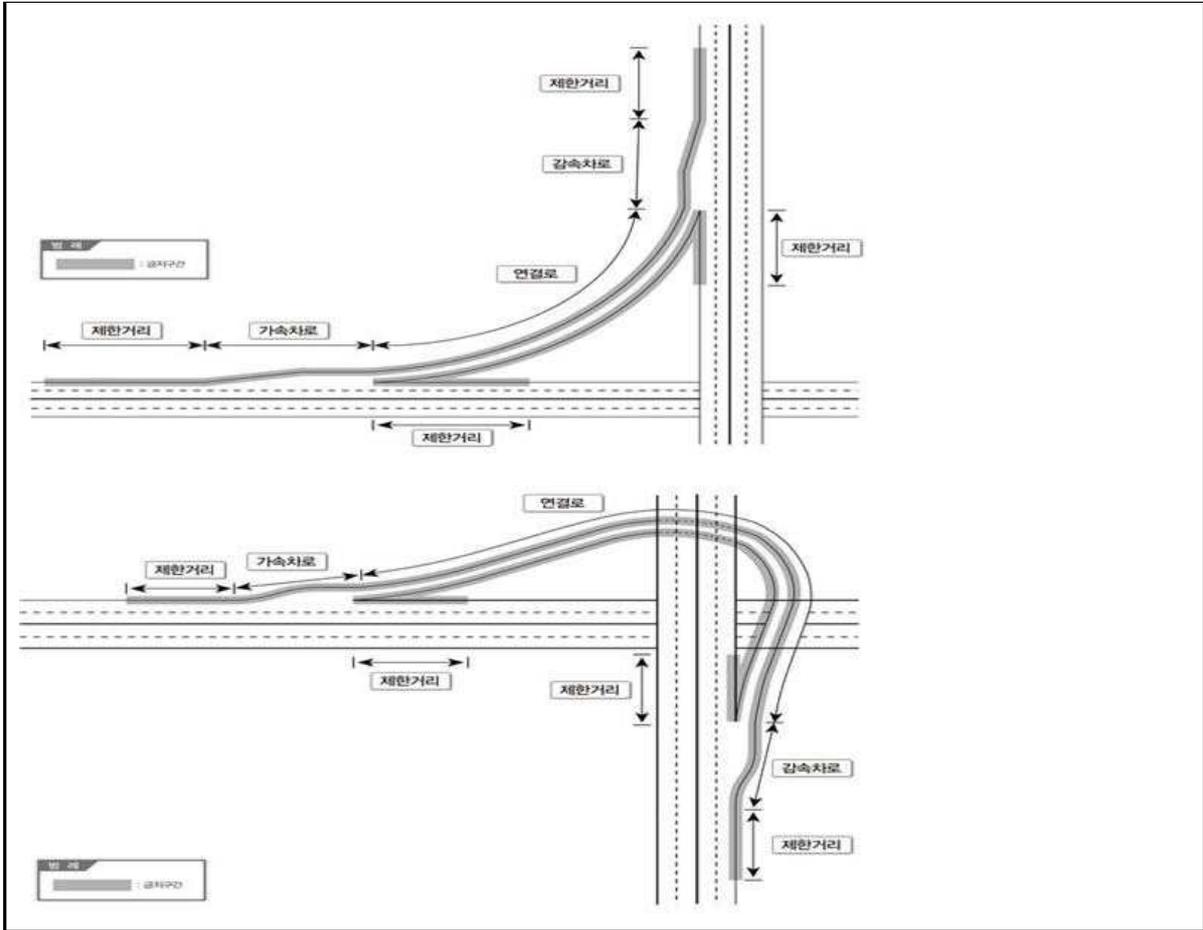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 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4차로 이상	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	60	45

-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별표 5]

변속차로의 최소길이(제8조제1호 관련)

(단위 : 미터)

시 설	주차 대수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 차로	테이퍼	가속 차로	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	-	30 (15)	10 (5)	45 (20)	10 (5)
나. 휴게소·주유소 등	-	30 (15)	10 (5)	45 (20)	10 (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	-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라. 사도·농로·마을진입 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6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 식점 등	1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6m)			
	11대 이상 20대 이하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21대 이상 50대 이하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51대 이상	30 (15)	10 (5)	45 (20)	10 (5)
바.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 ·운수시설·의료시설 ·운동시설·관람시설 ·집회시설 및 위탁시 설 등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6m)			
	21대 이상 50대 이하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51대 이상	30 (15)	10 (5)	45 (20)	10 (5)
사. 공장·숙박시설·업무 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6m)			
	21대 이상 50대 이하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51대 이상	30 (15)	10 (5)	45 (20)	10 (5)

아.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20가구 이하)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100가구 이하)	15 (10)	10 (5)	직접식 가속차로 20(10)	
	(101가구 이상)	30 (15)	10 (5)	45 (20)	10 (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	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 (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4.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